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43회 임시회(2020. 9. 10.)

2020년 제2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2020년 제2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20-97
----------	-------

2020. 9. 10 .
전문위원 신준호

1. 제출경위

- 가. 제 출 자 : 마포구청장(보건소)
- 나. 제 출 일 : 2020. 08. 25.
- 다. 회 부 일 : 2020. 08. 26.

2.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가. 세입예산

(단위:천원)

장·관·항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증감률
일반회계	12,792,298	12,123,445	668,853	5.52%
세외수입	298,602	475,541	△176,939	△37.21%
조정교부금등	271,662	271,662	0	0.00%
보조금	12,222,034	11,376,242	845,792	7.43%

나.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	증감률
일반회계	21,085,288	19,318,196	1,767,092	9.15%
인건비	3,961,111	3,921,724	39,387	1.00%
물건비	1,653,547	1,642,151	11,396	0.69%
경상이전	14,175,045	13,514,231	660,814	4.89%
자본지출	468,190	240,090	228,100	95.01%
예비비및기타	827,395	0	827,395	순증

3.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조직별 현황

○ 일반회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21,085,288	19,318,196	1,767,092	9.15%
보건행정과	3,799,972	3,378,582	421,390	12.47%
위생과	264,022	233,650	30,372	13.00%
건강증진과	14,579,128	13,264,297	1,314,831	9.91%
의약과	2,442,166	2,441,667	499	0.02%

4.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업별 증감 현황

가. 증·감액 및 신규사업

(단위:천원)

부서 · 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보건행정과	1)기간제근로자 보수	17,920	13,800	4,120
	1)암조기검진 홍보물 구매	1,800	0	1,800
	1)국민건강보험공단 암조기검진비 위탁	374,754	262,332	112,422
	1)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759,764	751,732	8,032
	1)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신규인력 지원	70,000	0	70,000
	1)선별진료소 운영비	15,600	0	15,600
	1)자가격리자 위생키트(KF마스크 등)	16,000	0	16,000
	1)자가격리자 위생키트 등기 소포비	7,920	0	7,920
	1)에이즈환자 등록관리	1,600	1,750	△150
	1)에이즈환자 진료비	216,520	164,594	51,926
	1)에이즈 진단시약 구매비	1,600	1,750	△150
	1)표본감시기관 홍보물 및 운영물품비	200	340	△140
위생과	1)물품 지원비(신규)	28,280	0	28,280
	1)홍보 인쇄비 및 방역물품(신규)	2,040	0	2,040

(단위:천원)

부서 · 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건강증진과	1)금연클리닉 운영비	28,399	40,300	△11,901
	1)금연교육 강사비	2,600	7,150	△4,550
	1)니코틴 보조제	9,451	30,000	△20,549
	1)생애주기별 신체활동영양사업 강사비	4,550	7,800	△3,250
	1)건강체중 '몸짱' 프로젝트 강사료	0	6,240	△6,240
	1)주민건강 걷기트레이너 강사료	0	2,600	△2,600
	1)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임금,보험료 등)	42,014	32,614	9,400
	1)홍보물품 및 사무용품	8,282	2,402	5,880
	1)임상병리사 인건비	31,785	32,985	△1,200
	1)마포건강관리센터 홍보물	2,700	3,200	△500
	1)심혈관질환 검진 운영용품	0	600	△600
	1)경동맥초음파 검진장비 유지보수	0	330	△330
	1)동맥경화도검사기 유지보수	0	220	△220
	1)마포건강관리센터 대사검진시약 등	0	14,000	△14,000
	1)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5,351	102,551	△7,200
	1)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62	17,111	△16,449
	1)홍보물	0	2,000	△2,000
	1)부부출산준비교실 업무추진비	0	600	△600
	1)행사실비지원금	0	5,600	△5,600
	1)대사증후군 검진 및 소모품	0	7,420	△7,420
	1)아파트 승강기 광고료	0	22,000	△22,000
	1)홍보 및 소모품비 등	10,000	15,000	△5,000
	1)마을건강센터 의료소모품 등	12,000	20,000	△8,000
	1)국가치매치료관리비	92,840	101,840	△9,000
	1)찾동 사무용품 구입비	1,300	2,600	△1,300
	1)기간제근로자 인건비(신규)	66,136	0	66,136
	1)사무관련 용품 구매(신규)	76,200	0	76,200
	1)디바이스 유지보수비 및 유류비(신규)	3,000	0	3,000
	1)사업추진 간담회(신규)	500	0	500
	1)블루투스 혈압계 및 혈당계 구매(신규)	31,500	0	31,500
	1)업무용 패드 및 사무기기 구매(신규)	228,100	0	228,100
	1)노인예방접종(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1,513,599	1,225,401	288,198
	1)고위험군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	74,513	122,050	△47,537
1)중학생 1학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46,806	0	46,806	
1)중학생 2학년~고등학생 3학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337,134	0	337,134	

(단위:천원)

부서 · 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건강증진과	1)임산부 및 영유아관리 업무추진비	0	760	△760
	1)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교실	0	4,400	△4,400
	1)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68,000	98,000	△30,000
	1)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26,380	31,380	△5,000
	1)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95,752	240,000	55,752
	1)청소년산모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600	2,400	△800
	1)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35,340	52,000	△16,660
	1)산후조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240,000	340,000	△100,000
	1)마포건강관리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국내여비	1,200	7,200	△6,000
	1)찾동 방문간호사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828,428	843,848	△15,420
	의약과	1)홍보물구입비	7,190	22,300
1)대사증후군센터 소모품		4,000	12,000	△8,000
1)대사증후군 프로그램 운영 홍보비		750	3,150	△2,400
1)건강커뮤니티운영		0	5,000	△5,000
1)전산소모품(아현건강증진센터)		3,000	7,000	△4,000
1)운동프로그램용품비		1,090	2,000	△910
1)요리교실물품구입비		2,700	3,000	△300
1)복사용지 등 소모품 구매비		1,000	3,000	△2,000
1)차량유지비(유류비,수리비,기타 등)		4,310	9,310	△5,000
1)우편요금(일반,등기,등기반송료포함)		2,000	11,000	△9,000
1)취약계층 요리교실 재료비 지원		1,440	4,320	△2,880
1)강사비(대사증후군,만성질환관리 등)		1,350	2,550	△1,200
1)강사비(건강정보체험관 심폐소생술 등)		1,040	2,080	△1,040
1)강사비(운동 및 영양교육 프로그램 등)		18,550	46,750	△28,200
1)대사증후군센터 검진시약 및 소모품		0	6,000	△6,000
1)건강정보&생활안전 교육용 소모품		2,030	4,060	△2,030
1)건강정보&생활안전 교육 홍보물 제작		3,150	6,300	△3,150
1)건강정보체험관 교육홍보비		9,261	18,522	△9,261
1)건강정보&생활안전 평가대회		1,000	2,000	△1,000
1)건강정보체험관 행사비		2,282	4,564	△2,282
1)학생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		80,040	97,800	△17,760
1)아동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		11,760	12,760	△1,000
1)차량유지비(유류,수리비,기타)		3,000	5,000	△2,000
1)공공요금(각종공과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		4,000	18,000	△14,000
1)우편요금		4,000	10,000	△6,000

나. 국비 및 시·도비 반환금

(단위:천원)

세부사업 · 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보건행정과	1)암환자 의료비 지원 이자 반납	316	0	316
	1)지역사회건강조사 이자 반납	129	0	129
	1)암조기검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28,037	0	28,037
	1)제1군감염병환자 등 입원(격리)치료비 집행잔액 반납	3	0	3
	1)생물테러대비 대응 역량강화-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매 집행잔액 반납	28	0	28
	1)국가결핵관리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15,848	0	15,848
	1)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사업 집행잔액 반납	4,033	0	4,033
	1)암환자 의료비 지원 이자 반납	368	0	368
	1)지역사회건강조사 이자 반납	65	0	65
	1)암조기검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32,709	0	32,709
	1)제1군감염병환자 등 입원(격리)치료비 집행잔액 반납	3	0	3
	1)생물테러대비 대응 역량강화-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매 집행잔액 반납	28	0	28
	1)국가결핵관리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10,586	0	10,586
	1)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사업 집행잔액 반납	4,033	0	4,033
	1)서울시 결핵관리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93	0	93
	1)HIV신속검사 운영 집행잔액 반납	7	0	7
	1)정신보건사업 이자 반납	11,725	0	11,725
	1)찾동 정신건강사업 집행잔액 반납	19,138	0	19,138
	1)자살예방사업 집행잔액 반납	172	0	172
	1)마음건강검진,상담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19	0	19
1)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6,668	0	6,668	
1)정신보건사업 이자 반납	2	0	2	
위생과	1)어린이보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비 이자반납	26	0	26
	1)어린이보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비 이자반납	26	0	26
건강증진과	1)재가암환자관리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27	0	27
	1)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5,492	0	5,492
	1)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이자 반납	4	0	4
	1)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829	0	829
	1)의료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6,595	0	6,595
	1)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안내등 홍보비 이자반납	4	0	4
	1)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36,064	0	36,064
	1)표준모자보건수첩제작 이자 반납	9	0	9
	1)난임부부 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31,039	0	31,039

(단위:천원)

세부사업 · 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건강증진과	1)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이자 반납	3	0	3
	1)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4,347	0	4,347
	1)모자보건사업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267	0	267
	1)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19,440	0	19,440
	1)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11,240	0	11,240
	1)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3,834	0	3,834
	1)통합건강증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3,438	0	3,438
	1)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집행잔액 반납	857	0	857
	1)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집행잔액 반납	3,278	0	3,278
	1)국가예방접종실시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104,139	0	104,139
	1)예방접종등록관리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107	0	107
	1)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177	0	177
	1)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자 반납	399	0	399
	1)재가암환자관리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14	0	14
	1)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2,746	0	2,746
	1)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이자 반납	2	0	2
	1)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415	0	415
	1)의료수급권자 영유아검진비 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3,298	0	3,298
	1)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안내등 홍보비 이자반납	2	0	2
	1)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42,074	0	42,074
	1)표준모자보건수첩제작 이자 반납	11	0	11
	1)난임부부 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36,212	0	36,212
	1)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이자 반납	2	0	2
	1)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5,072	0	5,072
	1)모자보건사업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311	0	311
	1)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22,680	0	22,680
	1)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13,114	0	13,114
	1)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4,473	0	4,473
	1)통합건강증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1,039	0	1,039
	1)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집행잔액 반납	258	0	258
	1)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집행잔액 반납	984	0	984
	1)국가예방접종실시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140,417	0	140,417
	1)예방접종등록관리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124	0	124
	1)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53	0	53
1)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3,866	0	3,866	
1)영양플러스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490	0	490	

(단위:천원)

세부사업 · 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 증감
건강증진과	1)싱겁게먹는배움터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63	0	63
	1)대사증후군관리사업 집행잔액 반납	372	0	372
	1)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16,183	0	16,183
	1)찾아가는동주민센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7,934	0	7,934
	1)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6,531	0	6,531
	1)난녀 건강출산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2,079	0	2,079
	1)통합방문간호사 찾동전환지원 이자 반납	869	0	869
	1)재가암환자관리(16년)이자 반납	34	0	34
의약과	1)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검진사업 집행잔액 반납	1,046	0	1,046
	1)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3,830	0	3,830
	1)통합건강증진사업 집행잔액 반납	1,298	0	1,298
	1)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사업 집행잔액 반납	3,580	0	3,580
	1)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사업 집행잔액 반납	523	0	523
	1)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1,165	0	1,165
	1)통합건강증진사업 집행잔액 반납	390	0	390
	1)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사업 집행잔액 반납	1,075	0	1,075
	1)보건지소 운영 지원 사업 집행잔액 반납	9,300	0	9,300
	1)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 사업 집행잔액 반납	4,272	0	4,272
	1)학생 및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 집행잔액 반납	2,349	0	2,349
	1)세이프약국 사업 집행잔액 반납	2,186	0	2,186
	1)건강돌봄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사업 집행잔액 반납	116,413	0	116,413
	1)2018년도 아현건강증진센터 사업 집행잔액 반납	2,595	0	2,595

5. 검토결과

가. 예산규모

- 보건소의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1억2,344만5천원에 5.52%, 6억6,885만3천원 증액되어 127억9,229만8천원임.
- 정상적 세외수입의 사업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한 진료업무 중단에 따라 감액편성 [3억163만6천원→1억2,469만7천원 (△58.66%, 1억7,693만9천원)]
- 반면, 보조금은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으로 국고보조금 4억8,873만8천원, 시·도비보조금 3억5,705

만4천원 증액 편성됨.

-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3억1,819만6천원에 9.15%, 17억 6,709만2천원 증액된 210억8,528만8천원임.

나. 부서별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역

-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33억7,858만2천원에 12.47%, 4억 2,139만원 증액된 37억9,997만2천원으로
- 편성내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고 지역사회 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예방관리 사업(선별진료소 운영비, 자가격리자 위생키트(KF마스크 등)’, ‘자가격리자 위생키트 등기 소포비’ 으로 편성하였고, 국·시비 확정내시액 변경으로 매칭사업인 암조기검진사업(기간제근로자 보수, 암조기검진 홍보물 구매, 국민건강보험공단 암조기검진비 위탁), 정신보건사업(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신규인력 지원), 에이즈예방관리(에이즈환자진료비)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음.
- 아울러, 에이즈예방관리(에이즈환자 등록관리, 에이즈 진단시약 구매비), 표본감시기관 홍보물 및 운영 물품비는 국·시비 확정내시액 감소로 감액하였음.
- 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2억3,365만원에 13.00%, 3,037만2천원 증액된 2억6,402만2천원으로,
- 이는, 서울시 안심식당 지정관리를 위한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푸드서비스 선진화(안심식당)사업의 매칭사업을 위해 신규로 편성한 것임.
- 건강증진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132억6,429만7천원에 9.91%, 13억 1,483만1천원 증액된 145억7,912만8천원으로

- 당초 예산 편성된 사업들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및 감염병 집중 대응과 관내 출산을 저하 등으로 사업진행이 어려워 대부분 감액 편성하였음.
- 하지만, 보건복지부 ‘ICT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이 확정내시되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업관련 용품 구매, 디바이스 유지보수비, 블루투스 혈압계 및 혈당계 구매, 업무용 패드 등의 비용으로 4억543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아울러, 국가예방접종 확대실시 (노인예방접종, 중학생 1학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중학생 2학년~고등학생 3학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따라 5억2,273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의약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24억4,166만7천원에 0.02%, 49만9천원 증액된 24억4,216만6천원으로
-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보건지소 사업 중단됨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음.

6. 검토의견

-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보건소 진료업무가 대부분 중단됨에 따라 기정 사업수입의 37.21% 감소된 부분을 편성하고, 국가 예방접종사업과 시범사업 등의 다른 매칭사업비인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증액분을 반영한 사항임.
- 세출 추가경정예산의 대부분은 코로나-19 비상 대응체계 구축에 필요한 선별진료소 운영 등에 관한 일부 사업과 에이즈환자 진료비, 국가필수예

방접종 확대,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안심식당 지정관리 등의 각종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증액 편성과,

- 감액된 예산의 경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보건소(지소)등의 사업 중단 및 프로그램 미운영에 의한 것으로, 연내에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
- 다만, 보건복지부의 ‘ICT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은 기존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노하우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노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비대면 건강관리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확정내시되어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코로나-19 발병 시기인 최근 구민의 의료서비스 확장 차원에서 바람직해 보이나, 향후 지속적인 사업의 추진시에도 국가 보조로 예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임.
- 또한, 서울시 안심식당 지정 운영 사업의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업소를 안심식당으로 지정하여 구민의 식사문화 개선과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으로 사업의 타당성은 보이나, 지속적 운영·관리를 위한 예산 소요가 연차별로 증가될 것으로 보이므로 중장기적 예산 추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기타 매칭사업의 국·시비 반환금은 확정내시액의 증감이 발생하여 증가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